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8)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9)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제

마.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통행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분(二分)하여 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고속도로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위하여서만 통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0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의 최소 기준을 2018년 1월 1일부
터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은
100분의 90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